

의 안 포 제	제2720호~제2722호
------------------	---------------

2026. 03. 16.(월) 10:00
제37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3건(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0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차상현 의원 외1명)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 직위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및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등
 -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 및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고 그 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준용
-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 자료 (안 제6조)
 -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는 별지(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서류 제출
-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안 제7조)
 -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
- 위원회의 활동기간 (안 제10조)
 -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안 제11조 ~ 제12조)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본회의에 보고 및 군수 송부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7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요청하는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1호
- 제출일자 : 2026. 3. 4.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외1명)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제5항제1호)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3회) → 10일(5회)
-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1일) 신설(안 제13조제9항)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안 별표3)
 - 배우자 출산 시 : 10일 → 20일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등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1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서춘경 의원 외1명)
- 회부일자 : 2026. 3. 6

2. 개정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안 제11조)
- 사후관리 강화(안 제12조)
- 직원 보호 강화 규정 신설(안 제16조)
- 심사기준표 관련 개정(별표)

4. 개정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의 강화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강화, 의원 임기만료 전 출장 제한, 징계 의원 출장 제한, 감사 의뢰 의무화 및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검토결과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723호~제2728호
----------	---------------

2026. 3. 17.(화) 10:00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 건 : 6건
(개정안3, 제정안1, 변경계획안1, 동의안1)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7
-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 9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13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3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차상현 의원 외 1)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의원 발의 · 위원회 제안 또는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재정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 (안 제1조 ~ 안 제3조)
 - (현행) 장성군수가 제출하는 의안
 - (개정) 장성군수, 의원 및 위원회, 주민청구조례안
- 비용추계 제외 대상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 작성시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
 - (현행)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상정 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비용추계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수 제출 의안 뿐만 아니라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까지 비용추계서를 확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4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외 1)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대상 및 교육의 중립성 (안 제5조 ~ 안 제6조)
 -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의 중립성 정비
-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안 제8조)
 -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및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근거 조항 명시
- 사업비 환수 조항 신설 (안 제9조)
 -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 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 가족행복과장 →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환경개선비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사업비 환수 조항 신설은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5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제4조 ~ 제6조)
 -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등 체계 정립(제7조 ~ 제8조)
 - 신고 및 조사 방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체계 정립
-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노력(제9조 ~ 제11조)
 - 비밀 유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 허위신고 제재(제12조)
 - 무분별한 신고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

4.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 의무) 및 제69조(징계사유)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및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처리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장성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신고·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허위신고 제재 등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임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6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2026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수입액 증가 및 2026년 지출계획 변경사항 반영(사회복지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부서명)	2026년도 운용계획								비고
	당 초				변 경				
	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26년도말 조성액	25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26년도말 조성액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2,818,518	155,881	155,880	2,818,519	4,403,309	155,881	2,047,198	2,511,992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 경	당 초	증 감	항 목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4,559,190	2,975,658	1,583,532	합 계	4,559,190	2,975,658	1,583,532
전 입 금	78,846	78,846	0	비용자성사업비	2,047,198	155,880	1,891,318
예치금회수	4,403,309	2,819,777	1,583,532	예치금	2,511,992	2,819,778	△307,786
이자수입	62,035	62,035	0				
기타수입	15,000	15,000	0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검토의견

-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수입·지출 계획 조정으로, 비융자성사업비 확대 및 예치금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적정 운용과 계획 변경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됨
-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무적·법적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7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 사항 이행
-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5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확대(5일→10일)
 - 분할 사용가능 횟수 확대(3회→5회)
-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1일) 신설(안 제13조7항)
 - 공무원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특별휴가 1일 부여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시 10일 → 20일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621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666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 이행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 확대, 공무원 생일·결혼기념일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복지 향상을 반영하고 있음.
-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8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현재 생활폐기물을 직영으로 수집·운반 중인 진원·남면과 향후 첨단3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 2) 대상지역 및 위탁대상 범위
 - 가) 대상지역 : 진원면, 남면, 첨단3지구(공동주택)
 - 나) 수집·처리대상 : 일반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 다) 처 리 량 : 약 3,300톤/년(일반 2,500톤/년, 재활용 800톤/년)
- 3) 위탁기간 : 2026. 7. 1. ~ 계속
- 4) 소요예산 : 513,988천원/년 ※ 산출근거 : 2026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5)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사유

- 공공서비스 공급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대응
- 환경관리센터 인력관리(연·평가 등 불규칙 결원) 어려움 해소
 - 환경미화원 등 인력감소(결원 4명 / 24년 1명, 26년 3명 퇴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지자체 책임부담 완화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진원면, 남면 및 첨단3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 위탁 사유와 위탁기간·대상·예산 및 입찰 방식 등이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관련 법령 및 재정적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729호~제2733호
----------	---------------

2026. 3. 18.(수) 10:00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5건(제정조례안 2, 개정조례안 1, 동의안 2)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선

목 차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6
-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0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29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회의장(나철원 의원 외 1)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장성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정)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지역 단서 조항 삭제**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입지규제 조정·정비 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장성군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까지의 직선거리” 기준을 현행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30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나철원 의원 외 1)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국내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잔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준수 등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 잔디산업 활성화, 연구 및 기술 개발(안 제6조 ~ 안 제7조)
-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및 위원회 수당 등(안 제9조 ~ 안 제13조)

4.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잔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등의 책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 잔디산업 활성화,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 근거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31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인구경제실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는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임.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현황

- 사업명 :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 위치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32년(9년간)
- 총사업비 : 3,966억원(공사비 1,810, 보상비 1,316, 기타 840)
- 사업규모 : 일반산업단지 조성 882,343㎡
- 산업시설 558,768㎡, 주거시설 48,923㎡, 지원시설 29,971㎡, 공공시설 244,681㎡

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체결

- 대상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내용 : 준공 후 3년 동안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장성군 매입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준공 후 3년 동안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장성군이 매입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 이는 향후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상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32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목적 :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기능 수행을 위함
- 위탁기간 : 2026. 4. ~ 2029. 3.(3년)
- 위탁사업 :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관 : 장성군 농촌협약 지원센터(대표 김혜영)
- 위탁사무
 -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
 - 주민, 현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 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367,000천원

○ 산출근거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용	비고
계	367,000,000원		
인건비	118,328,720원	8,136,000원×12개월 (인원 3명, 1일 8시간 근무) 17,696,720×1식 (인원 3명, 4대보험, 퇴직급여) 500,000원×3명×2회 (사무국장, 사무원 상여금)	
사무용품비	18,000,000원	1,500,000원×12회	
임차료	14,170,800원	1,180,900원×12회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6,500,480원	1,460,480원×1식 420,000원×12회	
운영비	210,000,000원	완료지구 활성화 등 프로그램 운영 210,000,000원×1식	

- 선정방식 : 기존 수탁기관 재위탁 심사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4.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제39조
- 장성군 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7조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 및 제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촌협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일반농산 어촌 개발사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위탁사무의 성격과 필요성, 업무의 연속성, 예산 산출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33호
- 제출일자 : 2026. 3. 6.
- 제출자 : 장성군수(농산유통과장)
- 회부일자 : 2026. 3. 6.

2. 제안이유

-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식산업 육성과 외식교육·창업·미식관광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시설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7조)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시설 사용, 사용료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8조)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식산업 육성 및 외식교육·창업·미식관광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종류, 업무 및 기능,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신청,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 근거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